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0 제품명: IJR-4000 MW301N (UL: IJR-4000KAE)
- 0 제품의 용도: 잉크젯용 UV경화형 마킹레지스트
- 0 제품의 사용 제한 용도: PCB 기판에 사용 이외의 용도
- 0 제조자, 공급자의 정보:
 - 공급회사명 : 한국다이요잉크(주)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 166 (신길동)
 - 연락처 : Tel 031)-491-9250, Fax 031)-491-7671. 담당자 : 영업팀
※ (24시간)긴급연락처 : 한국다이요잉크(주) 영업팀 031-491-9250.

2. 유해, 위험성 정보

0 유해, 위험성 분류

급성독성 물질	분류할수 없음
호흡기 과민성 물질	분류할수 없음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분류할수 없음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1회노출)	분류할수 없음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반복노출)	분류할수 없음
오존층유해성	분류할수 없음
피부 과민성 물질	구분1
흡인 유해성	분류할수 없음
발암성 물질	구분2
심한눈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분류할수 없음
피부부식성 및 자극성 물질	분류할수 없음
생식독성 물질	분류할수 없음

※ 분류결과 해당없는 경우 표시하지 않음.

0 그림문자



0 신호어

경고

0 유해, 위험 문구

[H317]알레르기성 피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351]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0 예방조치 문구

[P261](분진 · 흄 · 가스 · 미스트 · 증기 및 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72]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P280](보호장갑 · 보호의 · 보안경 · 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201]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P202]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0 대응 조치 문구

[P321](의사/의료기관을 도움의 받아 응급)처치를 하시오.

[P302+P352]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로 씻으시오.

[P333+P313]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언 · 주의를 받으시오.

[P362+P364]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08+P313]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언 · 주의를 받으시오.

0 저장 및 폐기 문구

[P405]밀봉하여 저장하시오.

[P501](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내용물 · 용기를 폐기하시오.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이명)	CAS번호	함유량(%)
Titanium dioxide	13463-67-7	5 ~ 10
1-Methoxy-2-propanol	107-98-2	1 ~ 5
Acrylic Monomers	기업비밀	30 ~ 40
Acrylic Resin & Others	기업비밀	40 ~ 50
Aluminum Hydroxide	21645-51-2	< 0.3
Total		100

* 상기의 구성정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화학물질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 2012-14호)에 의거하여 공개대상물질을 공개(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흐르는 물에서 15분이상 세안 후, 안과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신속하게 물 또는 온수로 씻어 버린 후, 비누로 잘 씻어 낸다.

다. 흡입했을 때

증기의 흡입에 의해, 불쾌감을 느끼면 공기가 신선한 장소에 이동하고,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라. 먹었을 때

-휘발성 액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토해 내게 하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안정을 취한 후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바.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

-호흡하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산소의 공급을 고려하시오.
-피부나 눈에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물질의 영향으로 더 악화될 수 있음.

마. 급성 및 지연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영향

11번 항목 참조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및 부적절한) 소화제

이산화탄소, 거품, 분말, 건조모래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자료 없음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 조치

-발화지점의 연소원을 제거하고 이산화탄소, 거품, 분말, 건조모래 등을 이용해 바람을 등지고 소화한다.
-안면보호구, 방화복, 방화신발(안전화), 방화장갑 등을 착용하시오.
-할 수 있다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키시오.
-연소생성물의 흡입을 피하시오.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가. 인체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청소 작업자는 피부 오염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보호 장갑이나 보호 도구를 착용한다.

나. 환경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사항

누출된 제품이 하천, 수로 등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누출된 양이 소량인 경우는 건조모래, 흙, 텁텁, 청소용 걸레 등에 흡수시켜서 밀폐할 수 있는 빈용기에 회수한다.
-누출된 양이 대량인 경우는 토성으로 둘러싸서 확산을 방지한 이후, 청소용 걸레 등에 흡수시켜서 밀폐할 수 있는 빈 용기에 회수한다.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 취급은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서 한다. 옥외에서의 취급은 될수있는한 바람을 등진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 취급할 경우 적절한 보호도구(8. 접촉제한 및 개인보호 부문을 참조)를 착용한다.
- 실내에서의 취급은 전체 배기 또는 국소 배기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 작업한다.

나. 안전한 저장 방법(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 밀폐 용기에 넣어서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보관한다.
- 10 ~ 20°C 이하의 어두운 장소.
- 안전한 포장용기 재료 : 밀폐 가능한 용기.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성분	K-TWA	K-STEL	ACGIH-TWA	ACGIH-STEL	생물학적
13463-67-7	10mg/ m ³		10mg/ m ³		
107-98-2	100ppm	360mg/ m ³	150ppm	540mg/ m ³	100ppm

* 주

TLV-TWA: 시간가중평균치. 1일 8시간, 1주 40시간(미국 기준)에 대한 평균 농도로서 거의 모든 근로자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고 폭로될 수 있는 농도.

TLV-STEL: 단시간 노출한계. 15분 이내를 넘어서는 안되는 농도. 1일에 4회 이상 폭로되어서는 안됨.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작업장에는 국소 배기장치 또는 전체 배기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 개인 보호구

- 호흡기의 보호도구 : 유기ガ스 마스크.
- 손의 보호도구 : 보호 장갑.
- 눈의 보호도구 : 보호 안경.
- 피부 및 신체의 보호도구: 보호 의 (대전방지형 긴소매, 긴바지, 앞치마),
보호 구두(대전방지형 안전구두, 고무장화) 등
- *) 적절한 위생 조치 : 취급 후에는 화장실에 가고, 양치질 등을 한다.

9. 물리화학적 특성

다. 냄새 역치(취기한계)	10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C)	95°C
사. 인화점(°C)	86°C
차. 폭발의 상/하한값	1.9~13.1%
카. 증기압	0.975
파. 증기밀도	(air=1) 4.97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0.13
너. 자연 발화 온도(°C)	270°C
더. 분해 온도(°C)	205~215°C
나. 냄새	독특한 냄새있음
라. pH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해당없음
가. 외관	백색의 액체
하. 비중	1.13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머. 분자량	자료 불충분
마. 녹는점/어는점(°C)	자료없음
레. 점도	28cps(25°C)
버. 산화성	비해당
타. 용해도	물에 용해되지 않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 가. 화학적 안정성 (상온상압) 통상적인 작업조건 아래에서 안정함.
- 나. (유해)반응성 물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 다. 피해야 할 조건 열, 빛, 화염 등
- 라. 피해야 할 물질 인화성 물질, 강산, 강알칼리, 과산화수소 및 강산화물 및 강산화제
- 마.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정상적인 취급 조건시 분해산물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연소시 이산화탄소, 질소 산화물 및 기타 유기기체(혹은 증기) 등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독성에 관한 정보

0 호흡기를 통한 흡입 : 자료없음.

0 입을 통한 섭취 : 자료없음.

0 피부 접촉 : 자료없음.

0 눈 접촉 : 자료없음.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나.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자연, 급성 영향 및 만성 영향

0 급성독성물질(경구)	비해당
0 급성독성물질(경피)	비해당
0 급성독성물질(흡입)	비해당
0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자료없음
0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자료없음
0 호흡기 과민성 물질	자료없음
0 피부 과민성 물질	혼합물 : 구분1 -물질명 : Acrylic Resin & Others -물질명 : Aromatic Carbonyl Compounds
0 발암성 물질	혼합물 : 구분2 -물질명 : Titanium dioxide ,(출처 : IARC)
0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자료없음
0 생식독성 물질	자료없음
0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자료없음
0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자료없음
0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다. 독성의 수치적 척도(급성 독성 추정치 등)

0 급성독성(경구)	자료없음
0 급성독성(경피)	자료없음
0 급성독성(흡입)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가. (급성)수생·육생 생태독성 비해당
-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자료없음
- 다. 생물 농축성 자료없음
- 라. 토양 이동성 자료없음
- 마. 기타 유해 영향(해양오염 등) 자료없음

바. 혼합물에 따른 분류

0 급성수생(갑각류)	25%이하로 해당없음
0 급성수생(해조류)	자료없음
0 급성수생(어류)	자료없음
0 만성수생(어류)	25%이하로 해당없음
0 만성수생(갑각류)	25%이하로 해당없음

0 만성수생(해조류) 25%이하로 해당없음

0 만성수생 환경유해성 물질(어류) 비해당

0 만성수생 환경유해성 물질(갑각류) 비해당

0 만성수생 환경유해성 물질(해조류) 비해당

사. 오존층 유해성 비해당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 방법

폐기물 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

-외부에 위탁할 경우는 지방정부의 인가를 받은 산업체폐기물을 처리업체에 위탁한다.

-폐기물 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된 경우 해당 규정에 명시된 주의사항을 고려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 : 해당없음

나. 유엔 적정 선적명 : 해당없음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해당없음(86°C/세타 밀폐식)

라. 용기등급(해당하는 경우) : 해당없음

마. 해양오염물질 : 자료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운송전 반드시 용기에 파손이 없는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적재시 용기가 뒤집히거나, 떨어지거나, 파손을 피해야 합니다.

-끈으로 단단히 묶어, 운송과정 중 화물이 풀리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

제조금지물질 : 비해당

허가대상유해물질 : 비해당

관리대상유해물질 : 13463-67-7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13463-67-7

노출기준설정대상물질 : 8번항목 참조

발암성물질(1A~B) : 비해당

발암성물질(2) : 13463-67-7

특수건강진단물질 : 비해당

특별관리대상물질 : 비해당

오존층보호 특정규제물질 : 비해당

나. 화학물질관리법

취급금지물질 : 비해당

취급제한물질 : 비해당

유독물질 : 비해당

허가대상물질 : 비해당

사고대비성물질 : 비해당

배출량조사대상물질(1) : 비해당

배출량조사대상물질(2) : 비해당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

제4류 제3석유류, 위험등급3, 화기엄금

라. 폐기물관리법의 규제 :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외 법에 의한 규제

- 잔류성유기용제관리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 비해당

- 기타

로테르담 : 비해당

스톡홀름 : 비해당

몬트리올 : 비해당

16. 기타 참고사항

- 1) 본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노동부고시 2016-19호(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및 UN의 GHS 분류/표시에 의거하여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 이 MSDS는 당사의 연구결과 및 현재 얻을 수 있는 물질의 각종 자료와 개별 물질정보의 자료출처는 하기의 자료 출처 부분 참조)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 또한, 본 MSDS는 하기 첨부자료의 법규제 관련 자료출처를 기준으로 당사의 관점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제품의 사용 지역 및 시점에 따라 법 규제가 달라질 수 있음으로, 본 법규제항목을 포함하여 그 외 해당 지역별 화학물질의 규제정보를 확인 후 규제에 맞게 대응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3) 이 MSDS는 오직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을 뿐, 안전 및 품질의 보증서는 아닙니다. 또한, 만약 본제품을 해외로 운송시, 사전에 본사의 판매 책임자와 연락을 취하십시오.

<작성 및 개정 이력>

작성일자 : 2013년 05월 29일, 개정일자 : 2017년 04월 30일, 개정번호이력 : 4

개정사유 : 원자재 구성 정보 UP DATE 및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19호 반영.

*첨부자료(자료의 출처)

[1] 자료출처

1. 혼합물에 대한 자료출처 : 한국다이요잉크(주) 기술연구소.
2. 단일물질에 대한 자료 출처 : 하기의 D.B에서 고려대학교-환경연구소 & (주)화학전략연구소와 원료메이커를 통해 물질기초정보를 조사함.
 - 1) Hazardous Substances Data Bank (HSDB)
 - 2) National Library of Medicine(NLM)
 - 3) Chemical Carcinogenesis Research Information System (CCRIS)
 - 4) The Chemical Database, The Department of Chemistry at the University of Akron
 - 5) International Chemical Safety Cards(ICSC)
 - 6)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IUCLID)
 - 7) IARC: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the carcinogenic risk of chemical to humans
 - 8)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NCIS)
 - 9) 한국산업안전공단 MSDS
 - 10) UNECE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GHS)
 - 11) 원료메이커 자료

[2] 15번 법규제 정보의 자료출처

1. 산업안전보건법 : 하기의 규제항목에 대하여 2017년04월30일 기준 해당법규 및 KOSHA.net을 통해 조사.
 - 1) 산업안전보건법 : 하기의 규제항목에 대하여 2017년04월30일 기준 해당법규 및 KOSHA.net을 통해 조사.
 - 1) 제조금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개정 2017.01.06 대통령령 제27767호]
 - 2) 허가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개정 2017.01.06 대통령령 제27767호]
 - 3)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5 [개정 2017.01.02 고용노동부령 제179호]
 - 4)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2 [개정 2017.01.02 고용노동부령 제179호]
 - 5) 관리대상유해물질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개정 2017.03.03 고용노동부령 제182호]
 - 6) 노출기준설정대상물질 :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개정 2016.08.22 노동부고시 제2016-41호]
 - 7) 발암성 물질(A1 & A2) :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개정 2016.08.22 노동부고시 제2016-41호]
 - 8) 특별관리대상유해물질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의2 [개정 2017.02.03 고용노동부령 제179호]

* 화학물질 분류/표시: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개정2016.04.06(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2.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 & 화학물질 관리법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NCIS)에 공개된 자료를 2017년04월30일 조사
 - 1) 금지물질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 · 금지물질의 지정 [개정 2017.04.14 환경부고시 제2017-76호]
 - 2) 제한물질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 · 금지물질의 지정 [개정 2017.04.14 환경부고시 제2017-76호]
 - 3) 허가대상물질: 미고시 상태 2017.04.30
 - 4) 유독물질: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 · 금지물질의 지정 [개정 2017.04.14 환경부고시 제2017-76호]
 - 5) 사고대비물질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개정 2016.07.27 환경부령 제668호]
 - 6) 배출량조사대상물질 :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개정 2014.12.31 환경부고시 제2014-255호]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의한 위험물분류 기준에 따른 자사 혼합물의 위험물분류 실시.
4. 폐기물관리법의 지정폐기물질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개정 2016.01.19 대통령령 제27792호]에 대하여 2017년04월30일 조사.
5.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1 [개정2017.03.27 대통령령 제27965호]에 대하여 2017년04월30일 조사.
6. 대기환경보전법 : 하기의 규제항목에 대하여 2015년01월05일 조사항.
 - 1) 대기환경보전 시행규칙 별표1 대기오염물질 & 별표2 특성대기유해물질 [개정 2017.01.26 환경부령 제689호]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고시[개정 2015.09.11 환경부고시 제2015-181호]
7.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1(지정악취물질) [개정 2017.01.19 환경부령 제688호]에 대하여 2017년04월30일 조사.
8. 국제협약에 의한 규제물질(몬트리올 협약, 로테르담 의정서 & 스톡홀름 협정)에 대하여 2017년04월30일 조사.